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552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호문, 장웅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9. 12.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554,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554,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19. 12.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은 C에게 ① 2016. 6. 21. 여신기간만료일 2020. 6. 21., 대출이자율 연 24.9%, 지연배상금율 연 27.9%로 하여 1,000만 원을, ② 2016. 6. 23. 여신기간만료일 2020. 6. 23., 대출이자율 연 24.9%, 지연배상금율 연 27.9%로 하여 500만 원을 각 대여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C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D은행은 2017.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7. 8. 28. 양수인 겸 채권양도통지 대리인으로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2017. 5. 31. 기준 채무원금 1,500만 원 및 연체이자 3,791,740원의 합계 18,791,74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여,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48112호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8. 'C는 원고에게 19,995,643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7. 10. 27.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의 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6. 3. 사망하였다. C의 법적상속분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1)이었으나, C는 2019. 12. 19. 피고와, C가 상속받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 전부를 피고가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2019. 1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의 무자력

C는 이 사건 분할협의일 당시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총 68,23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심화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C는 2019. 12. 19.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피보전채권의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19,995,643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다.

다만, ① C는 자신의 소유의 2012년식 CLS63 AMG 차량(등록번호 G,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25.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은행에 대하여 2016. 6. 22. 채권가액 1,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2016. 6. 24. 채권가액 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해 준 사실, ②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근저당권을 승계한 사실, ③ 이 사건 차량의 시세는 약 4,500만 원인 사실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위 1,500만 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2)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H이 2018. 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사건에서 집행관이 점유 확보를 하지 못하여 최종 기각처리가 되었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20. 4. 14.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어 이 사건 차량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갑 제6호증의 경매사건검색에 의하면, H이 2018. 4. 23. 인천지방법원 I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경매사건에서 기각된 이유가 집행관이 점유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20. 4. 14.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일 이후의 사정으로 사해행위 당시 원고의 우선변제권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 전부가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 기재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C가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재산처분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케 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망인을 사실상 혼자 부양하였고,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의료비, 망인 명의로 부과된 세금 등을 부담하는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고, ② 망인이 C에게 서울 금천구 J 다세대주택 K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보증금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는 등 C에게는 특별수익이 있으며, ③ 망인의 상속재산은 약 3억 2,000만 원(공시지가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약 3억 원 + 망인 명의의 예금채권액 약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상속인들(피고, C, F) 사이에 피고의 기여분을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피고가 F에게 8,000만 원을, C에게 망인 명의의 예금채권액과 피고의 돈 2,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피고의 기여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분할협약서(을 제10호증의 2)에 피고의 기여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약 5,000만 원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모(망인의 처) L이 2012. 3. 31. M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의 배우자인 N이 2014.

5. 5. L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관련 예금거래내역을 보면(을 제14호증), 망인이 아니라 L이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직접 망인으로부터 위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증여받아 이를 특별수익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결국 피고가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C에게 망인 명의의 예금채권액과 피고의 돈 2,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기여분과 C의 특별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정당한 몫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가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184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C는, C가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대신 강제집행이 어렵고 소비하기 쉬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점 및 그 외 C와 피고 사이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3~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5.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O조합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9. 12. 12. 위 공동근저당권이 각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분할협약이 2019. 12. 19. 이루어졌으나,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인 2019. 6. 3.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 사건은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일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 있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일에 가까운 2019. 6. 3.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519,236,0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의 대상이 된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의 시가는 173,078,683원(= 519,236,050원 × 1/3, 원 미만 버림)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과 관련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한도는 65,000,000원(= 195,000,000원 × 1/3)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최소 108,078,683원(= 173,078,683원 - 65,000,000원)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은 20,554,670원(= 19,995,643원 + 그 중 15,000,000원에 대한 2017. 9. 14.부터 2021. 6. 2.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559,027원 -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 15,000,000원)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 있는 위 피보전채권액 20,554,67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20,554,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취소되는 범위의 20,554,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민

[별지]

부동산 목록

1. 전라북도 익산시 대 238㎡2. 전라북도 익산시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9.5㎡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광 29.09㎡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광 15.86㎡

3. 전라북도 익산시 답 1937㎡4. 전라북도 익산시 답 4271㎡5. 전라북도 익산시 답 1279㎡6. 전라북도 익산시 전 357㎡7. 전라북도 익산시 전 121㎡8. 전라북도 익산시 전 1197㎡9. 전라북도 익산시 답 2588㎡ 끝.

- 1)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피고, C, F이 있다.

- 2) 2019. 12. 19.기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은 19,995,643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9. 12. 19.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 9,479,139원의 합계 29,474,782원이다.